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Q & A

□ 신청자격 관련 Q&A [해당자 : 공통]

Q.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느지역의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과 접해있는 연접 지역내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서울시 또는 용인시내 주택에 신청 가능

Q. 부모님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대학교 소재지역과 신청희망주택 소재지역내 LH 임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대학교 및 주택 소재지역과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타지역 출신에 해당하나요?

A. 부모님이 대학교 및 주택 소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역내 고등학교 졸업자도 타지역 출신에 해당됩니다.

Q.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청자격」 을 충족 하면 신청가능 합니다.

Q.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 형태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대학원생도 신청가능한가요?

A. 대학원생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료 관련 Q&A [해당자 : 공통]

Q. 임대보증금은 계약할 때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임대보증금은 계약 시에 10%, 입주 시에 나머지 9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임대보증금을 더 납부하고 임대료를 줄여서 낼 수 있나요?

A. 임대료는 공사의 보증금 전환이율(현재 8%)을 적용하여 백만원 단위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100만원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6,670원 차감

□ 소득확인(부모님 등) 관련 Q&A [해당자 : 2순위자]

Q. 소득확인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A. 신청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함), 신청인의 세대분리된 부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확인 대상입니다.

Q. 일반근로자의 경우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소득 산정시에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Q. 소득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소득으로 산정하나요?

A. 소득 산정시에는 기본급에 상여를 포함하여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Q. 실업급여나 연금을 받는 경우에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나 연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소득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서류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발급되기 전에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합니다.

- Q. 급여 압류 등으로 실 지급받는 소득이 증명서상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실 지급 금액을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 A.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급여가 압류 등으로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많더라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Q. 보험설계사 등은 급여를 지급받은 후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떤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A. 급여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로 산정하여, 일시 지급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소득증명서류를 발급하였다면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에 명시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 Q. 세대원이 가출로 연락 두절된 상태이나 주민등록 말소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소득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A.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 후에만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Q.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아르바이트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 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등이 발급 가능한 경우 소득을 산정합니다.
- Q. 소득산정시 근무기간은 월단위로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일단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A. 근무기간이 일단위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소득산정시 근무기간은 월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Q. 본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 A. 소득은 본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및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자산 확인[토지 및 자동차] 관련 Q&A

[해당자 : 2순위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

Q. 본인과 부모님의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개별공시지가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A. 토지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소유한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개별공시지가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 한 세대에 자동차가 두 대인 경우 입주대상 자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자동차의 경우 차량별로 과세표준액을 모두 합산하여 자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차량이 개별 차량별로 기준 이하이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